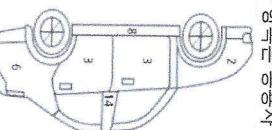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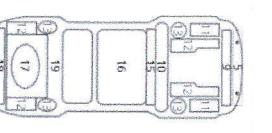


###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선택)

제 30-02-026282 호 ※ 자동차 조사·신정을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30-02-026282 호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 )**

<b>자동차 기본정보</b> (가격선정 기준가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① 차명	카니발	④ 검사유료기간	2024년 08월 04일 ~ 2025년 08월 03일
③ 연식	2023	④ 번속기 종류	자동 □ 수동 □ 세미오토
⑤ 최초등록일	2022-08-04	⑥ 무단변속기	□
⑦ 차대번호	KNANC8BBPS227195	⑧ 기타( )	
⑨ 사용연료	□ 가솔린 □ 디젤 □ LPG □ 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전기 □ 기타( )	⑩ 보증유형	□ 수소전기 □ 보증사보증 □ 보험사보증
⑩ 원동기형식	D4HE	⑪ 기준가격	194호 2853
<b>자동차 종합상태</b> (색상, 주요옵션, 가격조사선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⑫ 사용이력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상 대	첨재 주행거리[ 88,038 km ]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기대번호 표기	□ 양호 □ 불량	0.00%, 0ppm, 0%	만월
제출가스	□ 많음 □ 보통 □ 적음		만월
튜닝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삼이 □ 변조(변다) □ 도말		만월
특별이력	□ 없음 □ 있음		만월
용도변경	□ 없음 □ 있음	□ 청수 □ 화재	만월
색상	□ 무채색 □ 유채색	□ 렌트 □ 영업용	만월
주요옵션	□ 없음 □ 있음	□ 없음 □ 전체 □ 색변경	만월
리클대상	□ 해침없음 □ 해당	□ 썬루프 □ 내비게이션	만월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리클대행	□ 이행 □ 미이행
※ 상태표시 부호 : X (교환), W (판금 또는 응접), C (부식), A (임금), U (요철), T (손상) ※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단순수리	□ 없음 □ 있음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b>⑫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b>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b>⑬ 교환, 판금 등 이상 부위</b>			
외판부위 1랭크 2랭크 A랭크 B랭크 C랭크		1.후드 2.프론트휀더 3.도어 4.트렁크 리드 5.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부품) 6.쿼터페널(리어휀더) 7.루프페널 8.사이드실패널 9.프론트페널 10.크로스멤버 11.온사이드페널 12.사이드멤버 13.휠하우스 14.팰리페널 15.대수페널 16.플로어페널	만월

**자동차 세부상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 가격정보 (이 항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기본품목	가격조사·산정			
	외장	내장	외장	내장
수리필요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기본품목	보유상태	□ 있음 □ 없음 ( □ 사용설명서 □ 안전삼각대 □ 책 □ 스페너 )	최종 가격조사·산정 금액	만원
기본품목	기본품목	성능·상태점검자 비금속 또는 탈수차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 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미측정.	기본품목	11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기본품목	기본품목	가격·조사·산정금액	기본품목	기본품목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들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습니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로 있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30 )일, 보증거리는 ( 2,000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한행 지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자동차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실매물 조회 및 정비이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 자동차 실매물 검색 > 차량번호 입력  
- 자동차365 > 자동차 이력조회 > 매매용차량조회 > 자동차등록번호 검색
2.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나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9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정지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②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부로 자동차 주도주,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관부위 및 범퍼에 대한 편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합니다.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합니다.
7. 체크항목 편단기준(예시)
  - 미세누워(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생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태
  - 부식: 자동차부위와 오픈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による 현상
  - 점수: 자동차의 문 등기 기능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젖거나 흔적이 있는 상태
  - 현재 주행거리: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의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기록한 주행거리가 차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에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이 가격조사·산정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한 기준가격과  
( □기술사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준사를 적용하였음

( □기술사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준사를 적용하였음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들	
8. 가격조사·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부분 한정)에 적힌 내용에 하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작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적힌 내용에 하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작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산정사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매업자는 가격조사·산정자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9. 자동차매매업자는 가격조사·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되, 기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사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9. 자동차매매업자는 가격조사·산정자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10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되, 기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사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10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되, 기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사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11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11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이며, 가격조사·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이며, 가격조사·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1.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1.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2.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부분 한정)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습니다.	2.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부분 한정)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습니다.
3.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한행 지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자동차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한행 지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자동차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②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부로 자동차 주도주,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관부위 및 범퍼에 대한 편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②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부로 자동차 주도주,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관부위 및 범퍼에 대한 편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합니다.	5.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합니다.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합니다.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합니다.
7. 체크항목 편단기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누워(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생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li> <li>○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태</li> <li>○ 부식: 자동차부위와 오픈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による 현상</li> <li>○ 점수: 자동차의 문 등기 기능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젖거나 흔적이 있는 상태</li> <li>○ 현재 주행거리: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의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기록한 주행거리가 차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에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li> </ul>	7. 체크항목 편단기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누워(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생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li> <li>○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태</li> <li>○ 부식: 자동차부위와 오픈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による 현상</li> <li>○ 점수: 자동차의 문 등기 기능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젖거나 흔적이 있는 상태</li> <li>○ 현재 주행거리: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의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기록한 주행거리가 차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에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li> </ul>



점검 장면 촬영 사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3조의5에 따라  
(□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점검,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강남센터 박철승



(인)

2025년 05월 26일

매수인

민료일 : 2025-09-22

주식회사 다이아트 카닷컴 자동차매매업소 (인)

본인은 위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